

미국, 광업종사자 안전보건 법안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법 수정에 대한 기대

6월 29일 미국 민주당 상원 및 하원에서는 “2010 광업 종사자 안전보건법안”(Miner Safety and Health Act of 2010)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수정안을 발표함. 관련 법안 및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지 4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됨

1. 2010 광업종사자 안전보건법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수정안의 배경

- 올해 들어 발생한 수차례의 대형 참사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이 의회의 주요 당면과제로 부각되었음
 - 2월 Kleen Energy 발전소 폭발사고
 - 4월 웨스트버지니아 Upper Big Branch 탄광 폭발사고(29명 사망)
 -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
- 2010 광업종사자 안전보건법안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주요 수정조항을 포함하고 있음

2. 주요 OSH 수정조항(1):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확대

- 특정 업무가 근로자 본인 또는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고 간주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함
- 개별 고용 또는 단체교섭협상을 통해 근로자의 내부고발권을 박탈할 수 없음

3. 주요 OSH 수정조항(2): 피해자 권익 보호
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모든 절차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며 분쟁해결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발언권을 보장함

4. 주요 OSH 수정조항(3): 민사상 벌금 강화

- 고의적, 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한 최대 벌금액이 USD 70,000에서 USD 120,000로 강화되는 등 벌금 액수가 크게 오름
-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는 2015년 1월부터 최소 4년에 한 차례씩 증가함

5. 주요 OSH 수정조항(4): 형사처벌 강화

-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최대 형량을 20년으로 증가시킴
-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할 경우 해당 업무의 관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

6. 앞으로의 전망

- 광업종사자 안전보건법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수정안에 대한 의회 청문회는 7월 13일 열릴 예정이며 7월 말에 관련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임
- 현재 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법안은 민주·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

일본 후생노동성,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위험성 평가 지침서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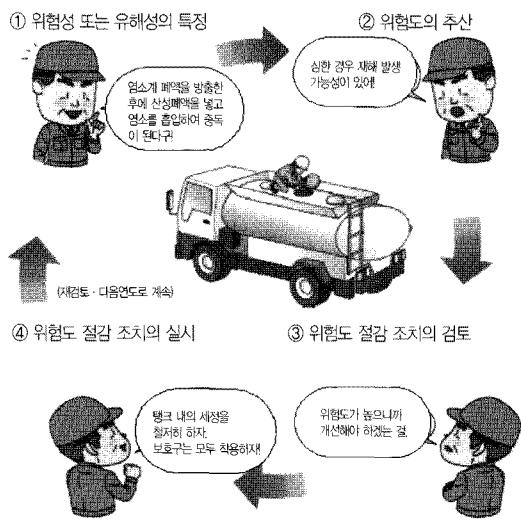
일
본

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를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음. 이에 따라 각 산업별로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음

1. 위험성 평가의 개념

- 작업에서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을 특정하고 그것에 의한 산업재해나 건강장해의 심각도(피해의 정도)와 그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를 조합하여 [위험도]를 추산하며 그 위험도의 크기에 근거하여 대책의 우선도를 정한 다음에 위험도의 제거 또는 절감조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일련의 방법
- 위험성 평가 적용 순서
 - 직장에 잠재하는 모든 위험성 또는 유해성을 특정한다.
 - 이를 위험성 또는 유해성마다 기존의 예방조치에 의한 재해방지 효과를 고려하여 위험도를 추산한다.
 - 추산에 근거하여 위험도를 절감하기 위한 우선도를 설정하고 위험도 절감조치의 내용을 검토한다.
 - 우선도에 대응하는 위험도 절감조치를 실시한다.
 - 위험성 평가의 결과 또는 실시한 위험도 절감조치를 기록하고 재해방지의 노하우를 누적하여 다음 위험성 평가에 이용한다.
 - 위험성 평가의 주요 실시 순서

2. 위험성 평가의 주요실시 순서



3. 위험성평가 도입의 실시 순서

- 1단계 : 경영대표자의 결의표명과 추진조직 결성
- 2단계 : 각 작업별 실시시기 지정(우선순위 등)
- 3단계 : 유사 산업재해 사례 정보 및 작업현장 위험사항 정보 수집
- 4단계 : 위험성 또는 유해성의 특성별 분류
- 5단계 : 위험발생 가능성 및 심각도 별 분류
- 6단계 : 위험도 절감조치의 검토 및 실시
- 7단계 : 위험성 평가 실시상황의 기록과 재검토

자료제공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